

안산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안

의안 번호	1353
----------	------

제출년월일 : 2005. . .
제 출 자 : 안 산 시 장

□ 제정이유

-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의2 규정에 의거하여 사회복지에 대한 중요사항 및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심의하고, 보건·복지 서비스의 연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설치되는 「안산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 주요골자

- 가.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수립, 시행, 평가에 관한 사항 등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기능에 관한 사항(안 제2조).
- 나. 대표협의체 및 실무협의체는 각각 위원장을 포함한 10인 이상 20인 이하로 하는 등 협의체 구성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간사 및 직원에 관한 사항(안 제8조).
- 라.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의결사항의 처리 및 주요사업에 관한 사항(안 제11조 내지 제13조).

□ 제정조례안 : 별첨

□ 관계법령발췌서 : 별첨

- 사회복지사업법 및 같은법 시행규칙

□ 관련사업계획서 : 해당없음

□ 예산수반사항 : 해당없음

□ 사전예고결과 : 의견없음

- 입법예고 : 2005. 5. 3 ~ 2005. 5. 25

□ 참고자료 :

- 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조례(안) 변경(안) 공문 사본(경기도 사회복지과-5917 (2005. 5. 3))

안산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조의3 내지 제1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안산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및 지역사회복지 실무 협의체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①안산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이하 “대표협의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건의하거나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

1.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수립, 시행, 평가에 관한 사항
2. 사회복지서비스 및 보건의료서비스의 연계·협력에 필요한 사항
3. 지역주민의 복지욕구조사, 지역 내 복지자원의 조사 및 개발에 관한 사항
4. 시장이 지역복지정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5. 그 밖에 지역사회 복지사업 전반에 대한 협의 및 건의 등

②대표협의체는 안산시의 사회복지서비스와 보건의료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관련기관·단체간의 연계·협력 업무를 행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표협의체의 기능 및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안산시지역사회복지실무협의체(이하 “실무협의체”라 한다)를 둔다.

제3조(구성) ①대표협의체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상 2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대표협의체의 위원은 「사회복지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의2제2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부시장·사회복지업무담당국장·보건소장·실무협의체위원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③대표협의체 위원장은 2인을 공동위원장으로 하되, 그 1인은 임명직 위원인 부시장으로 하고 나머지 1인은 위촉직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④실무협의체는 실무위원장 및 실무부위원장은 포함하여 10인 이상 2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⑤실무협의체의 위원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1조의4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이 위촉하되, 사회복지 업무담당(팀장), 보건의료업무담당(팀장)은 당연직위원으로 한다.

⑥ 실무협의체위원장은 실무협의체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대표협의체 당연직 위원이 된다.

⑦ 실무협의체에 지역사회복지에 관한 사항을 분야별로 조사·연구 또는 연계·협력 업무를 행하기 위하여 분야별 실무분과를 둘 수 있다.

제4조(위원명단 공개) 시장 또는 협의체 위원장은 제3조제2항 내지 제3조제4항에 의한 협의체 및 실무협의체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할 경우 위촉한 위원의 명단은 안산시 시보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대표협의체 및 실무협의체(이하 “각 협의체”라 한다)의 위원장은 해당 협의체를 대표하고 해당 협의체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각 협의체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각 협의체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위원의 임기) 각 협의체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보궐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7조(위원의 해촉)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은 위원이 사망, 질병, 품위손상, 기타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당 위원의 해촉을 시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제8조(간사 및 직원) ① 각 협의체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각 1인의 간사를 둔다.

② 각 협의체의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회의시 회의록을 기록·작성하는 등 각 협의체의 행정사무를 처리한다.

③ 각 협의체는 해당 협의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상근의 유급직원을 둘 수 있다.

제9조(회의 등) ① 각 협의체 회의는 해당 위원장이 소집하며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대표협의체는 년2회, 실무협의체는 년4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시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위원장이 자체없이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③각 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대표협의체 위원장은 대표협의체에서 의결된 사항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실무협의체 위원장은 실무협의체에서 의결된 사항을 대표협의체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회의록) 각 협의체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기록·작성하여야 한다.

1. 회의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명단
3. 심의사항
4. 심의결과
5.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11조(의결사항의 처리) 시장은 협의체의 의결사항에 대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의견의 청취) 각 협의체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전문가 또는 관계인(이하 “관계인등”이라 한다) 등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자료의 제출 및 기타 필요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인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3조(주요사업)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위원장은 제2조에 명시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할 수 있다.

1. 공청회 및 세미나 개최
2. 조사 및 연구
3. 교육 및 홍보
4.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
5.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4조(수당 및 여비) 각 협의체에 출석한 위원·전문가·관계인 등에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5조(협의체 운영지원) 시장은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보조하며,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별도의 사무공간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제16조(운영규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협의체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 ①(시행일)이 조례는 2005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폐지)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안산시사회복지위원회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소관 실·과		사회복지과
입 안 자	실·과장 직위·성명	사회복지과장 이 권 헌
	담당·팀장 직위·성명	사회담당 손 경 수
	담당자 성명·전화	손 경 수 (행정 2861)

안산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1353
----------	------

제안년월일 : 2005. 7. 1.
제 안 자 : 경제·사회위원장

1. 수 정 이 유

-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지역사회 복지의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민간협력체로, 실질적인 운영형태가 개별법령에 운영되고 있는 여타 위원회와의 상호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협의체위원장을 부단체장에서 단체장으로 할 필요성이 있으며,
- 위원의 임기에 있어 복지에 관심이 있는 많은 민간인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할 필요성이 있어 이에 맞게 관련 조항을 수정하고자 함.

2. 주 요 골 자

- 제3조 제3항 중 대표협의체 공동위원장은 “임명직 위원인 부시장”으로 하는 것을 “시장”으로 하는 것으로 수정함.(안 제3조)
- 제6조 중 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한다”를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로 수정함.(안 제6조)
- 제8조 제3항 중 “상근의 유급직원을 둘 수 있다”를 “상근의 유급직원을 둘 수 있으며, 사회복지전문가를 공개채용 한다”로 수정함(안 제8조)

안산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안산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3조제3항 중 “임명직 위원인 부시장”을 “시장”으로 한다.

제6조 중 “2년으로 한다.”를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로 한다.

제8조제3항 중 “상근의 유급직원을 둘 수 있다”를 “상근의 유급직원을 둘 수 있으며, 사회복지전문가를 공개채용 한다”로 수정함(안 제8조)

조 문 대 비 표

원 안	수 정 안
제3조(구성) ①~② (생략) ③ 대표협의체 위원장은 2인을 공동위원장으로 하되, 그 1인은 임명직 위원인 부시장으로 하고 나머지 1인은 위촉직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④~⑦ (생략)	제3조(구성) ①~② (원안과 같음) ③ 시장 ④~⑦ (원안과 같음)
제6조(위원의 임기) 각 협의체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보궐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원의 임기)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8조(간사및직원) ①~② (생략) ③ 각 협의체는 해당 협의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상근의 유급직원을 둘 수 있다.	제8조(간사및직원) ①~② (원안과 같음) ③ 상근의 유급직원을 둘 수 있으며, 사회복지전문가를 공개채용 한다.